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121호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「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11일

국토교통부장관

□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

당사자	성명	(주)금호환경
	주소	전라남도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 112
품질인증 용도		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20mm
처분내용		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(2023.9.11. ~2023.12.10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(건설산업과-2249, 2023.3.31.)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